〈단속 카메라 지나면 다시 과속〉

'캥거루식 운전' 하단 딱 걸린다

내달부터 호남고속도 곡성IC~석곡IC 10㎞ 첫 '구간 과속단속'

최다 속도위반 장소…세차례 걸쳐서 적발

경찰이 다음달부터 호남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구간 과속단속'을 실시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과속 운전이 많고 교통사고도 빈번한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곡성 나들목~석곡 나들목 구간 10㎞에서 '구간 과속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이란 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과속을 단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구간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통과 시 두 차례에 걸쳐 과속이 단속되고, 구간 통과 시간을 재 평균 시속이 제한속도(100㎞)를 넘겨도 단속한다.

해당 구간은 올 해 광주·전남 고속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 카메라중 속도 위반이 최다 적발된 곳이다.

전남청은 올 9월 말까지 이 구간에서만 모두 7374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 스티커를 발부했다.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 40개 구간에 설치했던 이동식 무인 카메라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또 안개가 잦아 올들어 23건의 크고 작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개가 잦아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지만 차량이 진·출입하는 나들목이 없다 보니 과속 페달을 힘주어 밟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구간 단속이 이뤄지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식 과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곡성IC~석곡IC 구간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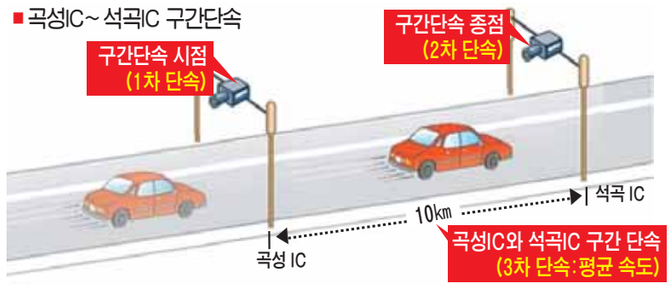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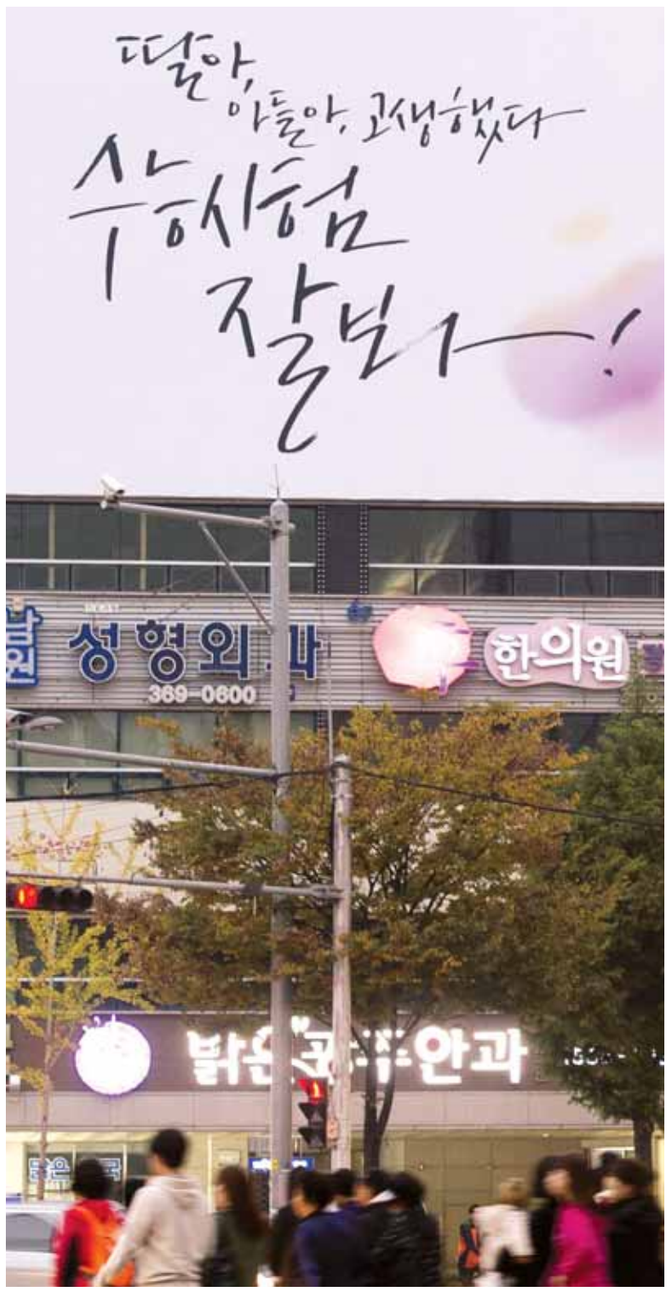

수험생 응원 대형플래카드

오는 7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밝은광주안과 건물에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가로 15m·세로 10m의 대형플래카드가 내걸려 행인들의 눈길을 붙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대학 특성화 5년간 1조 투입

2015년부터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전형' 전면 시행

7급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 '지역할당' 법제화 추진

지방대학이 자율적으로 또는 국가전략산업 분야로 특성화하는 데에 내년부터 5년간 1조원가량이 지원된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가 의대나 로스쿨 모집시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여기에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부터 19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성화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지향함은 물론 대학들이 사업을 주로 취업과 연계하는 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평가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사업 방향이 취업과 향후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특성화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별 차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되며,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공·사립의 구분, 권역·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선정 단위와 방법,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단 수와 예산액 제한 등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교조, 학생·노동 인권 주제 공동수업

광주·전남지역 오늘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부터 열흘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 기간동안 사회 수업시간에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조회·종례 시간에는 노동권의 의미와 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상황을 알리고 '우편향' 논란을 빚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김병일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생의 날(11월3일)과 전태일 열사 기일(11월13일)을 맞아 일제와 독재에 항거한 학생·노동자들의 희생과 의미, 민주화 과정을 되짚기 위해 공동수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버스·택시 운전사

승객 없어도 금연해야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사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늘 날씨

해뜸 06시 56분 해짐 17시 35분 | 달뜸 07시 26분 달짐 18시 11분

청명한 하늘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10/18℃
목 포	맑음	10/17℃
여 수	맑음	13/20℃
나 주	맑음	8/18℃
완 도	맑음	12/19℃
구 례	맑음	9/19℃
강 진	맑음	10/19℃
해 남	맑음	11/18℃
장 흥	맑음	10/19℃
순 천	맑음	9/19℃
영 광	맑음	10/18℃
진 도	맑음	12/16℃
전 주	맑음	10/8℃
군 산	맑음	9/16℃
남 원	맑음	8/17℃
흑산도	맑음	12/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증지수
주의	보통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2:07 14:46	07:28 20:01
여수	09:27 21:32	02:50 15: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 씨						
최저/최고	6/19	8/17	9/19	7/19	8/17	7/16

"내시경 의료기기 재사용…감염 우려"

최대 375회 재사용 지적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을 떼 낼 때 쓰이는 의료기기의 재사용 횟수가 많아 보건당국이 감염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에 쓰이는 생검겸자 사용 횟수가 최소 250회에서 375회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생검겸자는 대장 또는 위의 조직을 떼어내는 의료기기여서 무분별하게 재활용하면 집단감염 우려가 있어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사용 후 소독해도 조직 찌꺼기가 남는 경우도 더러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일회용 생검겸자까지 재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에 한 차례 정도 실태조사를 하며 이 또한 혈액투석 필터나 혈관 카테터(특수바늘)에만 집중돼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산후조리원, 31일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